

의안번호	제375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8월 29일

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37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8월 29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'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자립화, 사업화촉진을 통해 안정적 국내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
-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기술혁신전문펀드(모펀드)가 출자한 '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' 운용사로 선정된 (주)K&투자파트너스가 결성하는 「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」 출자를 위한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반영과 출자 여부에 대해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출자펀드 : 케이앤 소부장클러스터1호 투자조합
 - 출자 약정 총액 : 210억 원
 - 업무집행조합원 : (주)K&투자파트너스
 - 유한책임조합원 :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, 충청북도, 아이비케이저축은행(주), 산은캐피탈(주), (주)엔캠, (주)에스비아이캐피탈
- 출자대상 : (주)K&투자파트너스(대표 김철우)
- 출자기간 : 2023~2025(3년)
- 출자총액 : 50억 원(23년 20억, 24년 20억, 25년 10억 원)
- 최초출자기한 : 2023. 9. 30.

3. 참고사항

○ 추진경위

- (산업부)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('21.2월 지정) 연계 펀드 출자 제안('22.3월)
- (우리도) 50억 원 출자 결정('22.5.22.) 후 산업부에 출자 의향 전달('22.5.23.)
- (산업부) 결성규모 및 모 펀드 출자금 확정 후 우리도 출자 재요청('22.7.28.)
- (우리도) 출자 방침 결정('22.8.9., 지사님 결재) 후 출자 의향 재전달('22.8.10.)
- (한국성장금융)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('22.9.16.)
- (한국성장금융)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('22.11.17.)
- (위탁운용사) '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' 출자 요청('23.2.13.)
- (우리도) '케이앤 소부장 클러스터1호 투자조합' 출자 계획 보고('23.3.10.)
- (우리도) 2023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('23.3.14.)
- (우리도) 2023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('23.6.1.)

○ 주목적 투자분야 및 의무투자비율

- 아래 ①, ②, ③, ④ ⑤를 모두 충족할 것

- ① 소부장특화단지 소재(예정)한 제조기업(본사·공장) 등에 약정총액의 50% 이상 투자 ※ 단, 충청북도 소재 기업에 약정총액의 20% 이상 투자
- ②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관련 제조기업 등에 약정총액의 50% 이상 투자
- ③ R&D 용도에 약정총액의 50% 이상 투자
- ④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집행금액의 80% 이상 투자
- ⑤ 충청북도 소재 기업에 20% 이상 투자. 상기 ①의 충북 소재 소부장 특화 단지에 투자하는 금액까지 고려 시, 충북 기업에 총 40% 이상

4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

○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, 제19조

관계 법령

<지방재정법>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<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>

- 제18조(소재·부품·장비 전문투자조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,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,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8., 2023. 6. 20.>
 1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처투자회사
- 제19조(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(이하 “기금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.